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74 발의연월일: 2022. 6. 15.

발 의 자:하태경·김 웅·신원식

백종헌・양정숙・이만희

이채익 • 하영제 • 홍문표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점용·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,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.

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입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, 점용·사용허가 행위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,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

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·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 중 "협의하여야 한다"를 "협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 면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 거쳐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 상 공유수면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여건,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 리,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, 어업·선박의 항해·군사목적의 활동 등 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공유수면관리위원회) 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이 되고, 위원은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 시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

유수면관리청이 수립한 입지기준, 주민수용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공유수면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	제8조(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·사	③
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<u>협</u>	<u>협</u>
의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
	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거
	<u>쳐야 한다</u> . <u>이 경우 공유수면관</u>
	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허가대상 공유수면이
	소재한 지역의 환경여건, 해안
	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, 경관
	및 환경훼손 여부, 어업ㆍ선박
	의 항해・군사목적의 활동 등
	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
	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
	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하여
	야 한다.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공유수면관리위원회) ①
	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
	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

- ·의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 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수 면관리청의 장이 되고, 위원은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에 관 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 시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수립한 입지기준, 주민수용성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·의결하여야하며, 공유수면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 ④ 가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